

검 토 보 고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 제안이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하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게 된 것임.

2. 주요골자

- 매각처분 : 대지 1건 1필지-44㎡
- 유상대부 : 대지 1건 1필지-116.7㎡
 건물 1건-116.7㎡
- 재산의 내용

(단위 : ㎡, 천원)

구 분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공 시 지 가	비 고
매 각	괴정동 435-22	대	44	44,000	
대 부 허 가	당리동 317-16	대	116.7	1,780	토 지
	당리동 317-16	철 근 콘크리트	116.7	720	건 물

3. 검토의견

- ① 괴정동 435-22번지 대지 44㎡는 점유자 주창호가 '81. 4. 30이전부터 13평 정도의 브록스레트 건물을 소유하여 현재 살고 있으며 소규모 대지로서 보존의 가치가 별로 없고 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가격 감정평가하여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구재정 확보 방안의 하나이고
- ② 당리동 317-16번지의 지하 구내식당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7호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하여 정당한 가격에 사용허가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